

✓ 제 2 장 (이용계약에 관한 사항)

1. 이용계약의 목적

- 가.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수급자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.
- 나. 보호자로 하여금 수급자의 원활한 간호·간병을 위한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수급자 케어의 고충을 경감시킨다.
- 다. 수급자가 필요로 하는 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공한다.

2. 이용계약의 기간

- 가. 계약기간은 계약당일에서 계약당일 기준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며, 이용자 및 그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그 기간으로 한다.
- 나. 가 항은 대여품목에 한정한다.
- 다. 이용자는 계약기간 중 사망, 입원 등 중요한 신변상 변화로 인해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서면 등으로 상호 합의하에 처리한다.

3. 이용료 및 그 밖의 부담액

- 가. 복지용구 본인일부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. 다만, 수급자 중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① 기관이 수급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공단에서 지정한 수가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,
 - ② 감산율에 의하여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4사5입 한다.
 - ③ 복지용구는 연 160 만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 급여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.
 - ④ 본인일부부담금은 아래의 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급자가 직접 납부한다.

구 분	일반	경감·의료급여		기초수급자
본인일부부담금	15%	9%	6%	0%

- ⑤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서 사용 불가능한 복지용구 품목 및 대여 품목을 수급자가 대여 또는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모든 비용의 100%를 수급자가 부담해야 함을 고지해야 한다.